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체배송의 근거 명확화 〉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0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중 수

목 차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2206607)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체배송의 근거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2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5
1) 국토교통부	5
2) 고용노동부	5
3) 한국통합물류협회	6
4)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7
5) 전국택배노동조합	7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220660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체배송의 근거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6조의2(대체배송)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법 규정은 쟁의행위 시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파업행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재 생활물류서비스 업계에는 쟁의기간 중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를 고용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서 낮은 상황이라는 견해가 있음.

개정안은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어긋나지 않고 대체배송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임.

예컨대 ① 본사 직영기사, ② 비노조원의 경우 쟁의행위 시에 택배서비스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택배서비스업에 대체 투입하여 쟁의행위 중에도 차질없는 대체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파업 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본사 직영기사,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택배기사 등을 활용해 대체배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합법적 대체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지난 '22. 3. 2.에 CJ대한통운 파업 철회 당시 대리점과 노조측 합의문¹⁾에도 명시되고 있을 정도로 노조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노동조합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노동조합법을 준수하며 대체배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명시할 실익이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현재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제한 및 대체업무 제한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기타 다른 입법례는 없다는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참고자료 참조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연간 약 100회('23년)에 이르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택배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배송지연 등으로 인해 화주·국민들의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됨.

이에 소비자 등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 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대체근로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대체배송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한 노·사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고용노동부

개정안은 파업 등으로 택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법 제43조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고, 해당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는 가능함.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 오히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대체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한국통합물류협회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로 국한한다면, 현실적으로 대체배송은 불가함.

택배사업은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로서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 부패되기 쉬운 식품을 포함해 영유아·병약자·고령자의 필수용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 및 일반 국민 다수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시급함.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조파업 시 파업인력의 50% 이하 수준에서 대체배송가 가능함.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더라도 50% 이하 수준에서 대체배송 가능하기에, 국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영유아·병약자·고령자의 필수용품 및 식품 등 변질성 화물은 추가 배송 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별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4)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쟁의행위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택배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의약품, 신선식품, 영아용품, 긴급을 요하는 시한성 상품 등은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하여 정상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져야 함.

5) 전국택배노동조합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음.

그럼에도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택배노동자들의 사정을 악용하여 이 조항을 이용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

1. 금번 파업으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하여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한다.
3. 개별 대리점에서 금번 파업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2022.03.02.

< 서 명 자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장 김종철	수석부위원장 김태환
이사 이동근	CJ본부장 유성욱
이사 전현석	광전지부장 선창길
이사 석원희	서울지부장 남희정
사무국장 정진욱	경남지부장 황성욱

※ 자료: 국토교통부